

“대출 갈아타기로 고금리 부담 줄이고 신규 주택대출, 은행 vs 정부 상품 비교해야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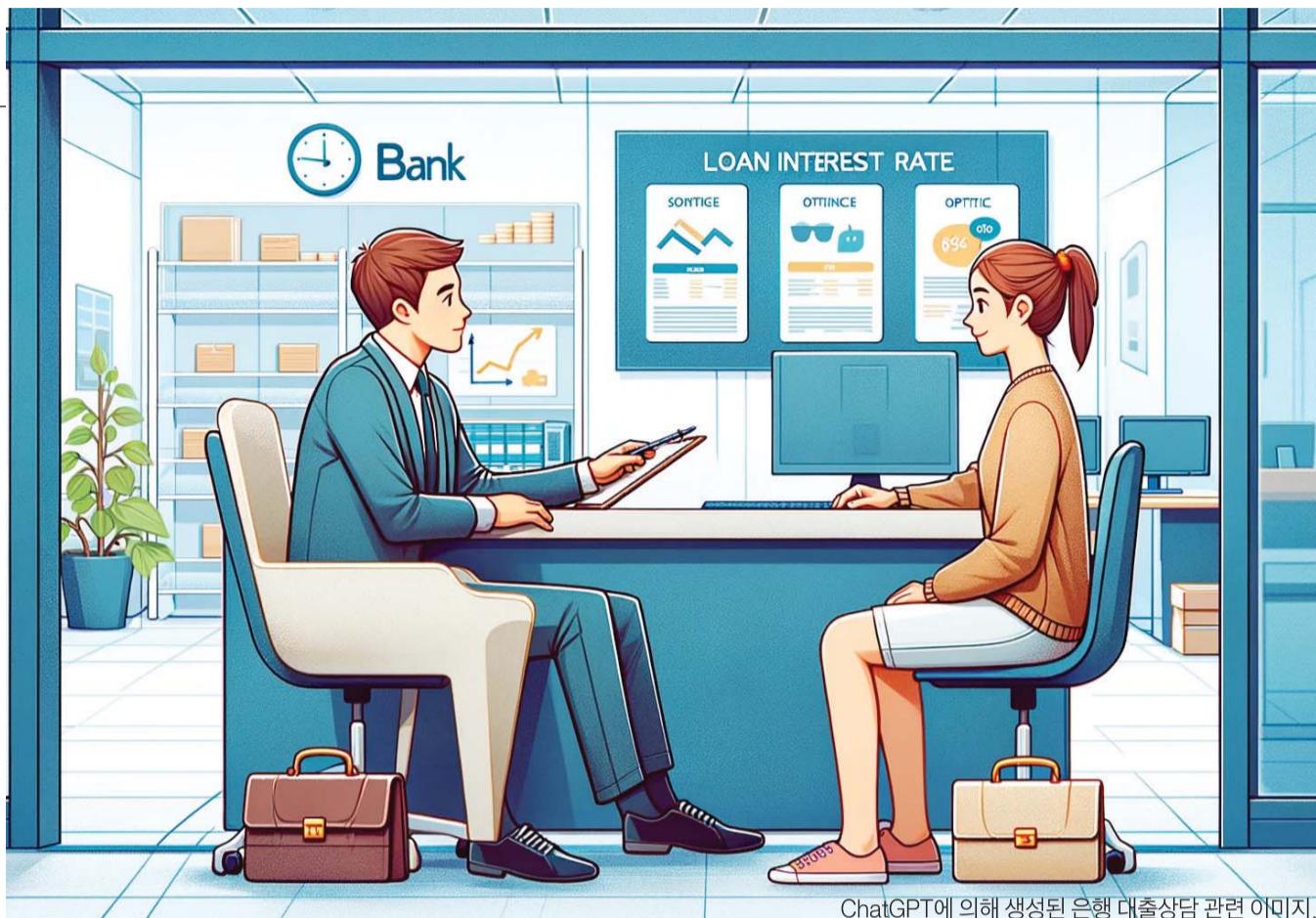
고금리 시대, 이자 줄이기

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대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.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(GDP) 대비 100.1%에 달한다. 이는 국제금융협회가 선진·신흥시장으로 분류한 34개국 중 1위다. 액수로 환산한 가구별 평균 부채는 1억2000만원에 육박한다.

대출 유형별로는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(1104조원)의 약 78%(865조원)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.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취급 평균 금리는 연 3.71%~4.85%(10년 이상, 혼합형)였다.

같은 기간 은행권 전세대출(보증기관 보증대출 기준)의 평균 금리는 연 3.58%~5.74%였으며, 서민 가구의 이용이 잦은 은행권 무담보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도 연 4.18%~10.61%에 달했다.

금융시장 불안정으로 당분간 고금리가 지속될 전망이다. 이에 따라 대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, 이미 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신규 대출 이용이 불가피하다면 부담해야 할 이자액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.



ChatGPT에 의해 생성된 은행 대출상담 관련 이미지.



◆ 더 낮은 이자로 대출 갈아타기

이미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온라인으로 금리를 비교해 이자 부담이 더 낮은 대출로 이동할 수 있는 ‘대출 갈아타기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.

지난해 5월 도입된 대출 갈아타기(대환대출) 제도는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. 차주는 인터넷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기존 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를 비교하고, 온라인 서류 제출만으로도 더 저렴한 대출로 이동할 수 있다.

특히 금융당국이 올해 1월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·전세대출에도 대출 갈아타기 제도를 확대하면서, 주담대·전세대출 이용자도 쉽게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.

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주택담보대출·전세대출 갈아타기 시행 이후 3만4207명이 주담대·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진행했고, 1인당 평균 이자 감면액은 연 262만원에 달했다.

다만 대출 갈아타기는 6개월에 한 번만 가능하고, 기준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. 또한 전세대출의 경우 잔여 임대차 기간이 전체 임대차 기간의 절반 이상일 때만(6월 3일부터는 잔여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)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.

또한 아파트 외 오피스텔·빌라 등 주거용 건물의 경우 현재는 대출 갈아타기 이용이 불가능하다.

국내 가계대출 규모 GDP의 100.1% 국제금융협회 선진·신흥시장서 1위

인터넷 대출비교 플랫폼서 금리 비교
온라인 서류 제출만으로 저금리 이동
올해 1인당 평균 연 262만원 이자감면
대출이동 어렵거나 기업대출 이용자
금융기관 ‘금리인하요구권’ 활용 가능

결혼 및 출생을 앞두고 있다면 올해 초 새롭게 출시된 주택 정책금융상품인 ‘신생아 특례 대출’도 고려할 수 있다.

지난 1월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인 ‘디딤돌 대출’과 전세자금대출인 ‘버팀목 대출’로 나눠 운영되며,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이력이 있는 부부 합산 소득 연 2억원 이하, 순자산 규모가 4억6900만원 이하 가구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.

대출 금리는 부부소득 규모에 따라 연 1.1~3.3%이다. 최고 금리 적용 시에도 은행권 대출·보금자리론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며, 기준에 보유한 주담대에서 갈아타기가 가능한 것 또한 특징이다.

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은 면적 85m² 이하(읍·면 소재 시 100m² 이하) 주택이며,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.

◆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

대출 이동이 어렵거나 기업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소득 증가·신용점수 상승·매출 증가 등을 사유로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.

지난 2019년 6월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·저축은행 등 여신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시장금리 및 신용 상태 변화에 따라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
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▲승진·이직으로 급여 및 안정성이 개선됐을 때 ▲연간소득이 대출 시점보다 증가했을 때 ▲운영하는 업체의 매출이 크게 개선됐을 때 ▲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점수가 향상됐을 때 등이다.

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차주가 직접 상환능력 개선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에는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나 자격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.

또한 금리 인하 심사는 연 2회까지만 요구할 수 있으며, 대출 발생일(신규 대출·대출 연장·대출 증액)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. 헛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이나 고정금리대출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어렵다. /안승진 기자 asj123@metroseoul.co.kr

<2024년도 보금자리론 운영 계획>

/금융위원회

	일반	신혼부부	다자녀			(신설) 전세사기 피해자
			1자녀	2자녀	3자녀	
소득	7천만원	8천5백만원	8천만원	9천만원	1억원	제한없음
주택가격			6억원			9억원
대출한도			3억6천만원		4억원	4억원
LTV			70%			100%

·만기 10~50년, 40년만기 : 39세 이하(신혼부부 49세)/50년만기 : 34세 이하 (신혼부부 39세)

<2024년 6월 기준 보금자리론 만기별 대출금리>

(단위 : %)

구 분	10년	15년	20년	30년	40년	50년
보금자리론('아낌e' 기준)	4.05	4.15	4.20	4.25	4.30	4.35

주) 다만, 대출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비대면('u'방식) 및 대면('t'방식) 적용 금리는 0.1%포인트 가산